

수 신 수신자 참조

(경 유)

제 목 폐수처리시설 운영환경 관리기준 강화 및 환경 관리설비 지원사업 안내

귀 사업장의 건승과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물환경보전법」 제35조 시행규칙 제7조 [별표5-2] 수질오염방지시설 설치기준의 개정에 따라 폐수처리 시설의 운영환경 관리기준이 강화되었으며 폐수의 적정 처리 및 수질오염 예방을 위한 환경관리체계를 구축하고자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가. 환경관리설비 설치 의무

다음 설비를 설치기준에 따라 설치·운영하여야 합니다.

1. IoT 기반 수질 모니터링 시스템
2. 자동 슬러지 제거장치

나. 환경관리설비 설치 지원사업

※ 세부 지원요건 및 환급기준은 붙임 1면 참조

다. 지도·점검

관할 행정기관은 개정된 법령에 따라 2026년 7월 1일부터 정기 또는 수시 지도·점검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점검 시에는 다음 사항을 중점 확인합니다.

- 환경관리설비 설치 여부
- 정상 가동 여부
- 폐수처리시설 적정 운영 여부

법령 위반사항이 확인될 경우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명령, 과태료, 행정처분 또는 지원사업 참여 제한 등 필요한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파주시청 

수신자 : 폐수처리시설 운영 사업주 귀하

담당부서 : 기후위기대응과 환경지도팀 주무관 : 김정환 환경국장 : 이민수 전결 2026.07

전화번호 : 010-4438-8050 FAX : 031-940-4200

우 [10932] 경기도 파주시 시청로 50

환경관리설비 설치 지원사업안내

정부는 법령개정에 따라 사업장의 환경관리 역량 강화를 위하여 환경관리설비 필수항목 설치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지원 대상 : 폐수처리시설 설치 의무 대상 사업주 전체

지원 품목 : IoT 기반 수질 모니터링 시스템, 자동 슬러지 제거장치

지원 규모 : 사업주 당 100,000,000원 한도 내 전액

가. IoT 기반 수질모니터링 시스템

- ☐ pH 자동측정
- ☐ 탁도 자동측정
- ☐ 유량 측정
- ☐ 운영정보 자동저장
- ☐ 이상 발생 시 경보 기능

나. 자동 슬러지 제거장치

- ☐ 침전조 슬러지 자동 제거
- ☐ 자동 운전 기능
- ☐ 유지관리 기록 기능

※ 행정처분 및 과태료 기준

위반 사항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
환경관리설비 미설치	과태료 300만 원	과태료 500만 원	과태료 800만 원
환경관리설비 기록 누락/허위기재	영업정지 15일	영업정지 1개월	영업취소 및 폐쇄



김 정 환 기후위기대응과 환경지도팀
주무관

경기도 파주시 시청로 50

Mobile 010-4438-8050

F A X 031-940-4200

E-mail eah223@korea.kr

www.paju.go.kr